2012년도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pp. 361~363

법령 개정에 따른 진단업무 처리절차 정형화에 관한 연구

조익순* · 김부영** · 이윤석†

*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, **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, † 한국해양대학교 운항훈련원

요 약 : 해상통항로상 각종 공사가 선박의 안전항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 시행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. 또한 제도 시행초기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해사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정착단계에 있다. 하지만 안전진단 수행 전단계의 정형화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에 대한 공통적이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,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 절차의 정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도시행과정에서의 주요 민원사항을 분석하고,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진단시행 주체별 역할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제도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.

핵심용어 : 해상교통안전진단, 법령개정, 안전진단업무, 처리절차, 정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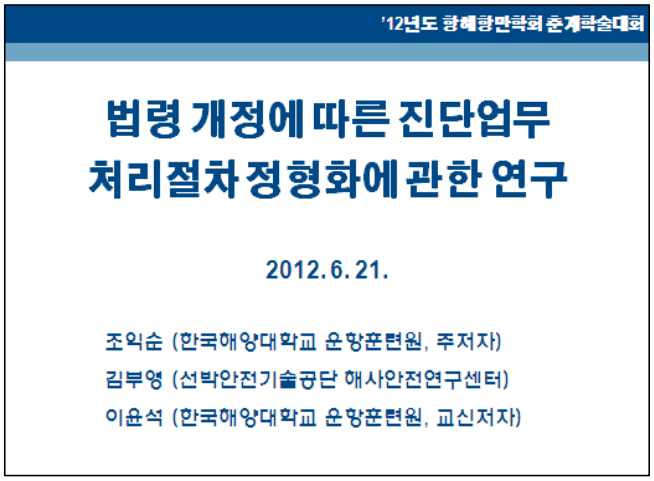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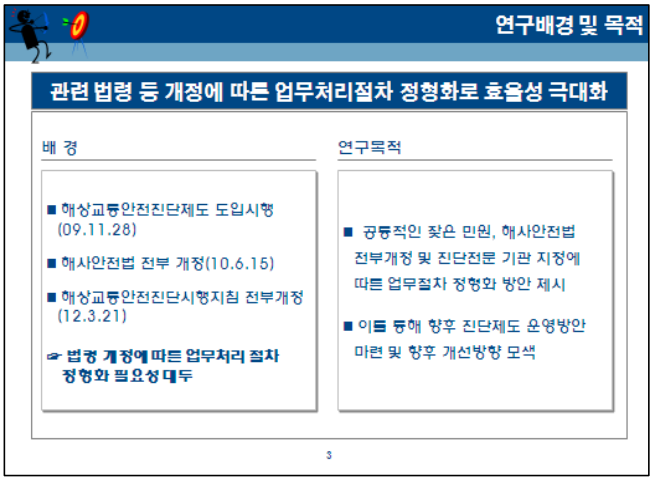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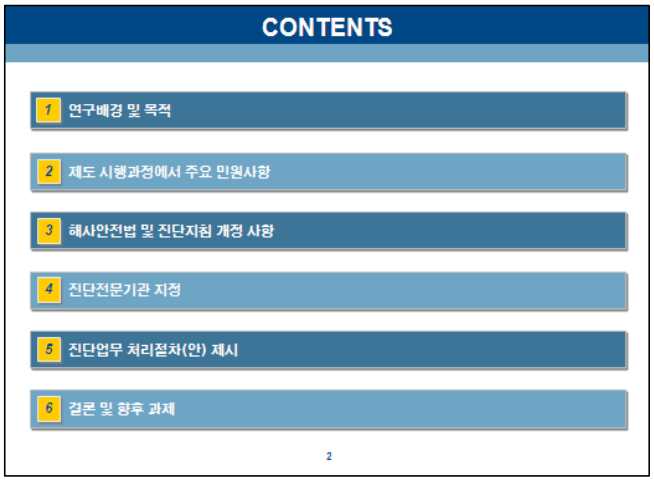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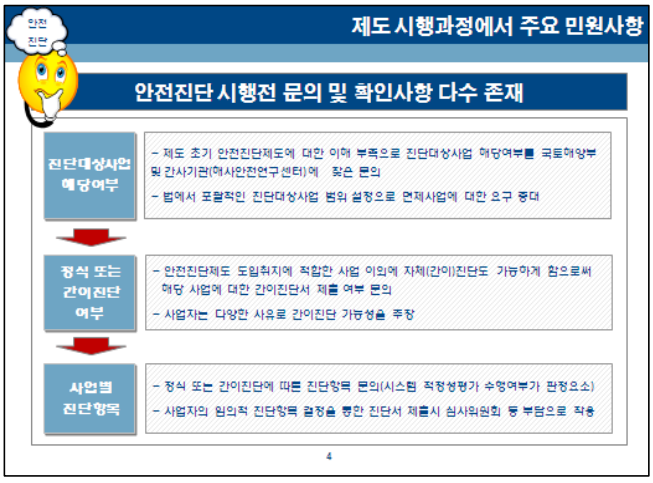

* 주 저 자 : 조익순(종신회원), ischo@hhu.ac.kr
† 교신저자 : 이윤석(종신회원), lys@hhu.ac.kr

해사안전법 전부 개정

해사안전법으로 개명하여 전부 개정('11.6.15)

개정 배경

- COLREG를 수용한 해상교통질서법으로 선박의 교통 규율을 위해 제정된 이후 해사안전 분야 일반법처럼 인식
- ISM, 출항통제 기준, 안전진단제도 등 선박 교통질서 이외 조문이 다수 결합

☞ 해사안전 정책에 관한 기본법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법명 변경

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관련

- 선박통항안전,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 시행사업 , 선박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에 대해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 근거 마련
- 진단대행업자 등록기준이 단일하여 중소업체의 등록이 곤란하므로, 등록대상을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2단계로 세분

5

안전진단 업무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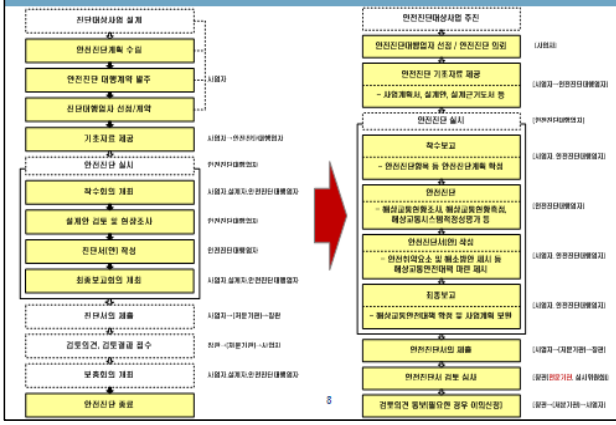

8

진단대상사업

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

기존

- 포괄적인 개념의 진단대상사업
  - 진단서 및 자체진단서 제출 사업의 진단지침상 규정
- 진단대상사업 해당 및 자체진단서 제출 여부 관련 불명확

지침 개정(12.3.21)

- 법 제16조(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)
- 지침 별표4 안전진단서 제출면제사업
  - 자체진단서 제출사업→면제사업
  - 관리선박(500톤이상) 및 관리수역(관리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으로 5킬로미터) 개념 도입

* 자체진단서 개념 삭제

6

사업별 진단항목

진단지침 개정을 통해 진단수행항목 개선

대상사업 \ 안전진단항목		해상교통 현황조사	해상교통 현황측정		해상교통시스템 적정성평가				해상교통 안전대책
			현황측정	교통 포화도	통항 안전성	정이한 안전성	정보 안전성	해상 교통로	
수역	설정	●	●	●	●	△	—	△	●
	변경	●	●	△	●	△	—	—	●
수역내 시설물	건설,부설	●	●	△	●	△	△	△	●
	보수	●	●	—	●	—	—	—	●
항만 또는 부두	개발	●	●	●	●	●	●	△	●
	재개발	●	●	△	●	●	△	—	●
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		●	●	△	●	△	△	△	●

●: 수행하여야 하는 항목

△: 조건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항목

9

진단대상사업

안전진단서 제출면제 주요사업

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	- 관련 법에 따라 선박의 통항에 이용되는 항로 등의 수역을 설정하거나 변경 1) 기존 항로의 통항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항로 등 수역의 존설 2) 관리선박의 통항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항로 등 수역설정 또는 변경
수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건설 부설 또는 보수	- 관리선박의 통항이 없는 관리수역안에서 시설물 건설부설 또는 보수 - 가항수역에 별도시설물 설치없이 가항수역을 횡단하는 전선, 해저케이블 등 설치부설 또는 보수
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 · 재개발	-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본계획(항만기본계획, 항만재개발기본계획, 신항만건설 기본계획)에 따라 개발 또는 재개발 하는 경우
계류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	- 관리수역 밖에서 관리선박이 이용하지 아니하는 부표계류시설, 부잔교, 부선, 폰툰 등 항만 또는 부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을 설치 변경하려는 경우

7

진단전문기관 지정

KST 해사안전연구센터를 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

기존

- 제도초기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변경으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부재
- 해사안전연구센터의 제도도입, 운영단계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 대응
  - 법적근거없이 제도 운영에 참여

개정(12.3.21)

- 안전진단서 검토 심사에 대한 전문성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도 운영에 간사 등으로 참여해 온 해사안전연구센터를 전문기관으로 지정
  - 대행업자의 등록요건 적합성 검토
  -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
  - 심사위원회 개최방법
  - 진단항목 및 진단업종 의견 제공

10

진단 전문기관

법적 근거를 둔 진단 전문기관 업무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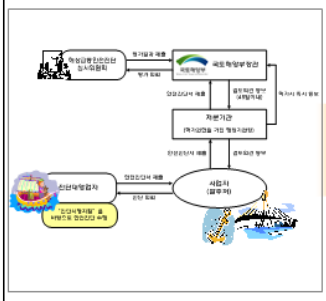

<기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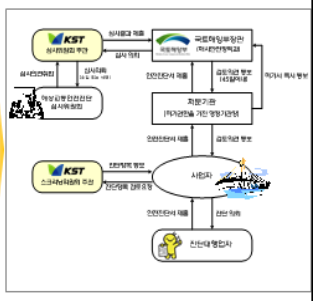

<법적근거 마련후 >

11

업무처리절차(개선안)

안전진단항목 결정 프로세스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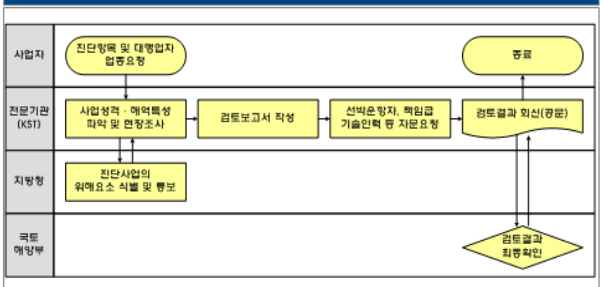

*진단항목은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을 갖춘 진단전문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제도 운영을 위해 효율적
(해사안전연구센터는 진단전문기관 지정 후 다수의 연구원(6명) 채용으로 전문기관으로써의 기반마련)

14

업무처리절차(기존)

기존에 진단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프로세스가 정형화되지 못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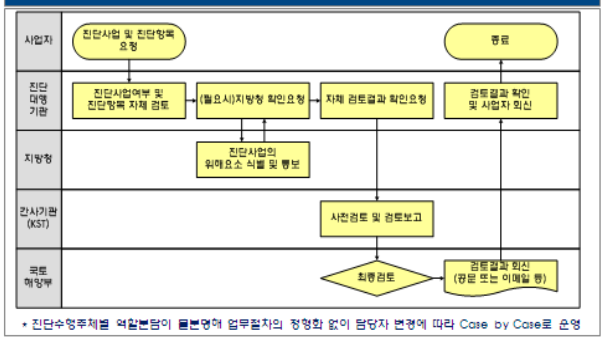

* 진단수행주체별 역할분담이 불분명해 업무절차의 정형화 없이 담당자 변경에 따라 Case by Case로 운영

12

업무처리절차(개선안)

안전진단제도관련 종합업무 처리절차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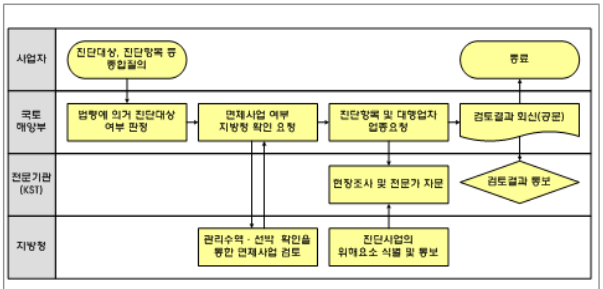

*국토해양부(지방청 포함), 진단전문기관 및 전문가집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한 업무처리절차 정형화 필요

15

업무처리절차(개선안)

안전진단 대상사업여부 결정 프로세스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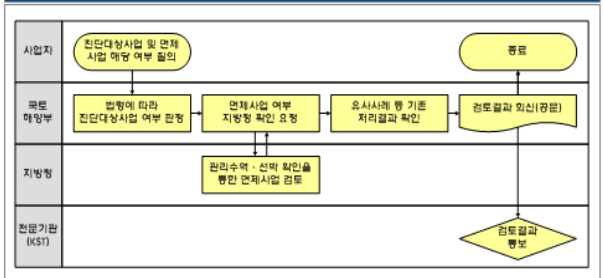

* 진단대상사업 해당 여부는 법령해석 측면이므로 국토해양부를 통한 업무처리 필수적
* 면제사업 여부 판정을 위해 진단전문기관의 전문가 운영을 위한 예산 필요

13

결론 및 향후과제

결 론	–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및 진단전문 기관 지정에 따른 업무절차 정형화 필요 – 국토해양부 및 진단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진단대상사업 여부, 진단항목 결정을 정형화된 프로세스에 따라 수행 필요 – 업무연속성 및 전문성을 갖춘 진단전문기관의 권한 및 역할의 극대화 방안 마련 필요(진단업무 정형화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조건)
향후 과제	– 진단 업무절차의 실효성 있는 정형화 방안 강구 및 지침 개정을 통한 반영 – 업무절차의 정형화를 통해 스크리닝 위원회 도입 등 전문기관 역할 증대 필요

16